

## 감사의 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튼튼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삼성생명 3만여 컨설턴트와 임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회사에 걸맞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는 삼성생명  
이 함께 하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보험약관'에 대하여

###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  
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본 약관집의 구성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  
다. 이 내용은 표준약관 조항과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등을 들어 설  
명한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I

주요내용 요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등 가입하신 보험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은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문의사항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거나 약관을 분실하였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 변액보험 펀드변경, 보험료납입 등

**콜센터 1588-3114**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문의 등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01. 주요 보험용어 해설

02.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03.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0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05. 주요 민원사항

06.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 01. 주요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  
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  
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02.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관련 표준약관과 함께 기재하였  
으며,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표준약관을 기재한 내용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  
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 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  
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  
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타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주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계약사항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3 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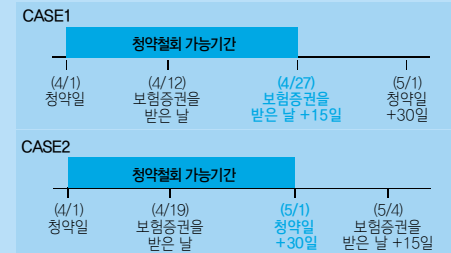
### 표준약관 제1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CASE2)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5/4일)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5/1일)을 초과하므로 청약철회가능기간은 5/1일까지로 합니다.

**4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해 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니버설상품의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 설**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납입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시**

납입기일(9/15)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 지난 11/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7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해 설**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보험금의 청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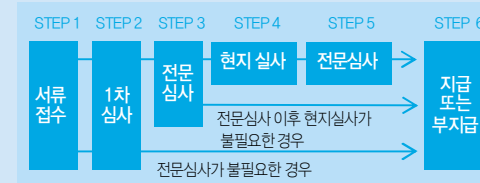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센터라 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장해	진단	실손	입원·통원 수술, 골절
고객플리자 /지점방문	●	●	●	●	●
우편		●	●	●	●
FAX/인터넷 /모바일				●	●

(※) 단, FAX/인터넷/모바일 접수의 경우 접수가능 금액 등의 제한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의 지급 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주의

- 위 내용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5. 주요 민원사항

### 유형 1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수령)시 소득세 차감 미설명

- A고객은 연말 세제혜택 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시, 보험설계사 B로부터 보험료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 시기가 되면 연금 수령은 물론 복리로 부리된 금액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목돈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
- 얼마전 회사를 퇴직하여 상기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자, 계약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일시금)시 소득세가 차감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제기

#### [유의사항]

세제적격형 연금저축보험은 관련 세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어 원천징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형 2 | 세제혜택을 위해 추가납입 문의하였는데 새로운 연금보험 가입 유도

- C고객은 월 20만원씩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을 이미 가입 중인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400만원)만큼 보험료를 추가 납입(160만원=연간한도 400만원- 월20만\*12개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설계사 D에게 문의
- 보험설계사 D는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납입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연금저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됨
- 그러나 기존에 가입 중이던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서도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함을 알게 되어 민원 제기

#### [유의사항]

관련 세법에 의해 2001년 이후 본인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계좌합산)로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범위 내에서 연 1,800만원(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300만원 한도 적용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15% 적용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

이 권리안내문은 금융거래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삼성생명이 처리하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처리정지권)

- 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관리·상당,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한 제공·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전화(080-331-3114)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ife.com) MY삼성생명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MY삼성생명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요구

-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플라자 방문,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

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고객플라자,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 삼성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정보 관리·보호부서 : 02-2259-70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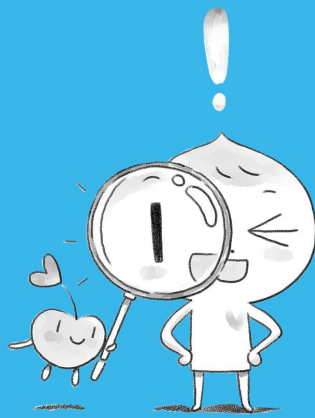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II

01. 주요내용 요약서

02. 가입자 유의사항

03. 한눈에 보는 가입부터 지급까지



## 01.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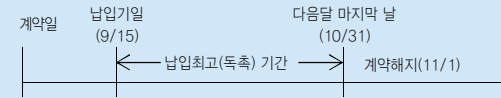
####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일시납상품은 제외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회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및 유니버설상품에서 의무납입기간내 연체 또는 월대체보험료 총당 불가시)

####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일시납상품은 제외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정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삼성생명 상담 채널 안내

삼성생명은 항상 고객님의 가까이에서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MY삼성생명 [www.samsunglife.com](http://www.samsunglife.com)

MY삼성생명에 접속하시면 고객님의 계약사항, 보장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업무 등 모든 보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MY삼성생명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센터, MY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02.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설명	<p>&lt; 연금수령 &gt;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p> <p>&lt; 연금수령요건 &gt;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p> <p>&lt; 연금수령한도 &gt; 연금 <math display="block">=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현재}} \text{연금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㉞}})} \times 1.2</math> 한도액</p> <p>㉞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p>
----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단, 공적 연금소득 및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제외. 이하 같습니다)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조건 경과 판정을 위한 기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

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금액과 무관하게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 형태를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⑨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⑩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⑩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준 : 기본보험료 20만원, 남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55%(5,100원) 7년 초과 ~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57%(1,140원)
	계약관리 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4.8%(9,600원)

#### 2. 해지공제액

경과 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상
해지공제 금액(만원)	11	9	7	5	4	2	0
해지공제 비율(%)	4.4	1.8	1.0	0.6	0.3	0.1	0

- (주) 1. 해지공제금액은 해지할 때 적립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2.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액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 3.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 기간중 계약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매회 연금연액의 0.8%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 관리비용	매월	추가납입보험료 기준금 액의 0.015%
		추가 납입시	추가납입 보험료의 1%

- (주) 1.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중 계약관리비용은 매회 연금연액의 0.5%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기준금액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 03. 한눈에 보는 가입부터 지급까지

#### STEP 01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 계약의 무효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 보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STEP 05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조항 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보험약관

00. 상품 목차

01. 주계약 약관

01-1. 상황별 목차

01-2. 조항별 목차



00. 상품 목차

---

---

**주계약**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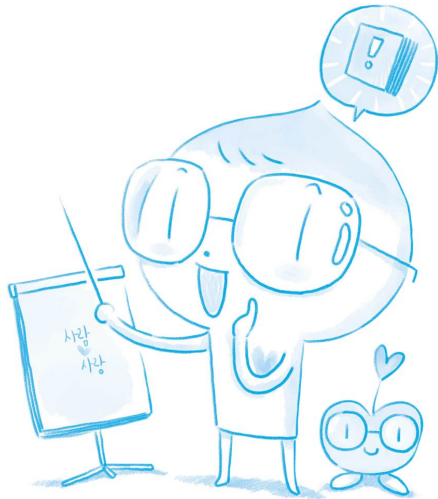
---

## 01. 주계약 약관

### 삼성생명

###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B2.3

#### 약관



## 01-1. 상황별 목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제2조(용어의 정의)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제16조(청약의 철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가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를 알고 싶어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고 싶어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싶어요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제9조(주소변경통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0조(보험나이)

## 01-2. 조항별 목차

<b>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b>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2조의2	용어의 정의2	7
제2조의3	보험기간의 구분	8
<b>제2관 보험금의 지급</b>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8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9
제6조	보험금의 청구	9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9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
제9조	주소변경통지	11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1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11
<b>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b>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1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2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
<b>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b>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13
제16조	청약의 철회	13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4
제18조	계약의 무효	15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6
제20조	보험나이	16
제21조	계약의 소멸	17
<b>제5관 보험료의 납입</b>		
제2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8
제2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8
제23조의2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19
제2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0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0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1
제2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2
<b>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22
제28조의2	계약의 세제혜택 등	24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6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6
제31조	해지환급금	27
제31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7
제31조의3	특별계정의 운용	28
제32조	보험계약대출	28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28
<b>제7관 분쟁의 조정 등</b>		
제34조	분쟁의 조정	29
제35조	관할법원	29
제36조	소멸시효	29
제37조	약관의 해석	29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9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9
제40조	개인정보보호	30
제41조	준거법	30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0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31
(별표2) 재해분류표		34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5

##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B2.3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에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계약일 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1개월 전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제3호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1만원 이상 천원단위).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는 150만원으로 하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정하며, 계약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의 200%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가 목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 보증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이

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효가수익률로 합니다.

4. 적립액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5. 특별계정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적립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설명	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	--

제2조의3 [보험기간의 구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단,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의2(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용어	〈보험금 가지급제도〉
해설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연금지급형태(중신연금형)를 연금지급개시를 신청할 때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름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기본보험료의 감 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를 연금지급개시를 신청할 때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 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개시나이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0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선택 가능한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기간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14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6세가 됩니다.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21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실종선고〉
해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④ 제3항의 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	〈보장개시일〉
해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의 1개월 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 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합니다.

#### 제23조의2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2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납입최고(독촉)>
해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적립액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서 제4항 및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용어	<부활(효력회복)>
해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기간 중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단, 동법 제25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하며, 이하 동일)에 따라 설정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중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⑤ 이미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대해 다른 연금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의2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설명	<p>&lt; 연금수령 &gt;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p> <p>&lt; 연금수령요건 &gt;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p> <p>&lt; 연금수령한도 &gt; 과세기간개시일<sup>※1</sup> 현재 연금 한도액 = <math>\frac{\text{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2}})} \times 1.2</math></p> <p>※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p>
----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단, 공적 연금소득 및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제외. 이하 같습니다)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금액과 무관하게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제세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1조의2(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비율로 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1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액,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 적립액에 적용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 날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합니다.

용어	〈최저보증이율〉
해설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로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1.0%, 10년 초과시에는 0.5%)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	---

**제31조의3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

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32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 적립하여 계약이 소멸할 때 지급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p>〈소멸시효〉</p> <p>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월 2일까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	--

**제37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생존연금 · 약관 제3조)**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은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 보증지급)

-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㉞)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

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4.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5. (제4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6.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8조의2(계약의 해제해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계약의 해제해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전 가입시]

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나이	만55세~59세	만60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10, 15, 20, 30년	5, 10, 15, 20, 30년

[만 50세 이후 가입시]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10, 15, 20, 30 년	5, 10, 15, 20, 30년

11.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8조의2(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재해의 정의

이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클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1.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1조 3항 관련)

구 분	기 간	적립이율
생존연금 (제3조)	보험기간 만기일 (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이 없게 된 날) 이 내	공시이율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31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㉞ 1. 생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6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